

산림청,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 대변인실
2020. 5. 21.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통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 및 생태 관리를 위해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2011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였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018년부터 산림청을 포함한 산림계와 국토교통부·조경계가 재논의를 벌여 「도시숲법」 제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도시숲법」은 지자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숲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서울시 도봉구 도시숲(좌)과 서울시 여의도공원(우)

출처: 산림청. (2020).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 법적 기반 마련. 5월 21일 보도자료.